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3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김윤덕·이형석·허 영

민병덕 · 안호영 · 신영대

민홍철 · 정춘숙 · 박재호

강훈식 • 박영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의 활성화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체계가 고 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 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

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 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경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제51조의5로 하고,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5(종전의 제51조의4) 중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수소 연료보조금 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 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 는 방해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제5호 중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을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또는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또는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 <u>광역시장</u> ·특별	⑤ <u>광</u> 역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u> 자치시장</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	i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u>국토</u>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특별시장· <u>광역시장</u> ·특별	⑥ <u>광역시장·특별</u>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u> 자치시장</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	
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조금의 지급기준 ·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u>국토교</u>
정하여 고시한다.	통부렁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이하 "수소 연
 료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
 다. 이 경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법률 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 법률 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생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현 략)

⑦ (생략) <신 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행과 같음)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 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 지하여야 한다.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 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 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 급받은 경우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 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 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

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 제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종 또는 연료의 단가들 석용
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
<u>받은 경우</u>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
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
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u>경우</u>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u>]51조의5</u> (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79조(보고・검사 등) ①

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 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 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 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 8. (생 략)
- ②·③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략)

<신 설>

생 략)

③ ~ ⑤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 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 지-----유가보조금, 천연가 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 보조금-----
 - 6. ~ 8.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_
- 1.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51조의2제1항, 제51조 의3제1항 또는 제51조의4제1 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천연 가스 연료보조금 또는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 10. ~ 16.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